

파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그리고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 이라 한다)과

파테말라 공화국(이하 “파테말라” 라 한다) (이하 각각 개별적으로 “당사국” 이라 하고 또는 공동으로 “당사국들” 이라 한다)은

2018년 2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협정” 이라 한다)을 유념하고,

중미경제통합 하부체제 회원국으로서 파테말라의 협정 협상 참여를 유념하며,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집단도, 그 국가나 국가집단과 공동위원회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협정 제24.4조를 유념하고,

가입 절차가 개시되고 이하 규정된 파테말라의 가입 조건이 수락된 한-중미 자유무역 협정(FTA) 공동위원회 결정 제3/2021호를 유념하며,

다음의 파테말라의 협정 가입의정서(이하 “의정서” 라 한다)의 타결에 합의하였다.

1. 파테말라는 이 의정서를 통하여 협정 제24.4조에서 규정된 대로 파테말라와 공

동위원회 간 합의된 조건에 따라 협정에 가입한다.

2. 협정 서문의 “엘살바도르 공화국,” 다음에 “과테말라 공화국,” 을 삽입한다.

3.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5조 적용범위의 “엘살바도르,” 가 표기된 두 곳에서 “엘살바도르,” 다음에 “과테말라,” 를 삽입한다.

나. 제1.6조 정의의 **당사국들의** 정의에서 “엘살바도르,” 다음에 “과테말라,” 를 삽입한다.

다. 부속서 1-가 국가별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의** 정의에서 마호의 “, 그리고” 를 삭제하여 바호에 “, 그리고” 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에 대하여, 과테말라 공화국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제144조, 제145조 및 제146조에 정의된 과테말라인(guatemalteco)”

2) **영역의** 정의에서 마호의 “, 그리고” 를 삭제하여 바호에 “, 그리고” 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에 대하여, 자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4.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에서 다음을 추가한다.

“제7절
과테말라의 조치”

가. 수입관세 및 생산지역과 관련하여 법령 제15-2007호 국가낙엽 과수재배협력기금법(Ley del Fondo de Cooperación a la Fruticultura Decidua Nacional) 및 그 개정에 따라 2012년 중미공동관세체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SAC”)의 세번 제0808.10.00호에 분류된 상품에 대한 통제, 그리고

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나. 일반 주해 파나마 관세양허표의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일반 주해”

과테말라 관세양허표

1.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중미공동관세체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SAC”)를 포함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관세 품목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 발효 중인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최혜국(MFN)

관세율을 반영한다.”

- 다. 부속서 2-나 관세 철폐에 이 의정서의 부속서 1 한국 양허표와 과테말라 양허표를 제6절: 한국-과테말라로 추가한다.
- 라. 부속서 2-다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에 다음을 추가한다.

“제3절

과테말라의 조치

과테말라는 과테말라의 가입 발효일 후에도 아래에 기재된 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가. 과테말라 공화국 국회(Congreso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법령 제19-69호 커피법(Ley del Café), 국가원수 법률 제114-63호 및 국가원수 법률 제111-85호”
5.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제3.6조 누적 제1항의 “엘살바도르,” 가 표기된 두 곳에서 “엘살바도르,” 다음에 “과테말라,” 를 삽입한다.
 - 나. 제3.28조 정의의 **권한 있는 당국**의 정의에서 바호의 끝에 “, 그리고” 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 “사. 과테말라의 경우,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의 대외무역 운영지도국(Dirección de Administración del Comercio Exterior)”

- 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코스타리카,” 와 “온두拉斯,” 사이에 “과테말라,” 를 삽입한다. 그러한 삽입은 다음의 소호 범위에서 적용된다: 5408.10-5408.34, 5510.11-

5510.90, 5516.11–5516.94, 6001.10, 6001.21–6001.29,
6001.91–6001.99, 6002.40–6006.90, 6101.20–6117.90,
6201.11–6217.90, 6301.10–6308.00 및 6309.00

라.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의 제10
란에서 “엘살바도르(SV),” 다음에 “과테말라(GT),”를 삽입한다.

6.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6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 제6항에서 마호의 “, 그리고”를 삭제하여 바호에 “, 그리고”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의 경우,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7.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6-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에서 마호의 “, 그리고”를 삭제하여 바호에 “, 그리고”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의 경우,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8. 제7장 무역구제 제7.15조 정의의 **권한 있는 당국**의 정의에서 마호의 “, 그리고”를 삭제하여 바호에 “, 그리고”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의 경우,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의 대외무역
운영지도국(Dirección de Administración del Comercio
Exterior)”

9. 제8장 정부조달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부속서 8-가 적용범위에, 이 의정서의 부속서 2의 절을 해당되는 각 절의 끝에 각각 추가한다.¹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부속서 2의 제1절, 제3절, 제5절, 제6절 및 제7절은 각각 “사. 과

- 나. 부속서 8-나 제8.5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이 활용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에 다음을 추가한다.

“과테말라

과테말라 공화국 공식 기관지 중미 공식관보(Diario de Centro América)

www.dca.gob.gt”

- 다. 부속서 8-다 제8.6조 및 제8.15조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당사국들이 통지의 공표를 위하여 활용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에 다음을 추가한다.

“과테말라

과테말라 공화국 공식 기관지 중미 공식관보(Diario de Centro América)

www.dca.gob.gt

과테말라 계약 및 조달 정보 시스템(GUATECOMPRAS)

www.guatecompras.gt”

10. 제9장 투자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제9.30조 양자 투자 조약의 종료 제1항에서 다음의 바호를 추가한다.

“바. 2000년 8월 1일 과테말라에서 서명되고 2002년 8월 17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테말라 양허표”로 추가되고, 이 의정서의 부속서 2의 제2절은 “바. 과테말라 양허표”로 추가된다.

나. 부속서 9-나 공공 목적에서 라호의 “, 그리고”를 삭제하여 마호에 “, 그리고”를 추가하고 다음의 바호를 추가한다.

“바. 과테말라의 경우, 공동 효용, 사회적 이익 또는 공익”

다. 부속서 9-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에서 다음을 추가 한다.

“과테말라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과테말라에 송달된다.

Direcторate of Foreign Trade Administration (Dirección de Administración del Comercio Exterior)
Ministry of Economy (Ministerio de Economía)
8^a. Av. 10-43 Zona 1,
Guatemala, Guatemala”

11. 제11장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부속서 11-가 국경 간 무역에 다음을 추가한다.

“과테말라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서 열거된 서비스만을 위한,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서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

2. 제11.5조제1항은 보험서비스에 관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나호에서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1/}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11.5조제1항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서 언급된 금융 정보와 금융 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서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다.^{2/}

^{1/} 인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약속은 제1항에 열거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은 포함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 관련 그 밖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고 부수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서 언급된 그러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과테말라에서 금융 자료 처리는 국가 영역 밖의 자료 처리를 위하여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나. 부속서 11-나 금융서비스위원회 제1항에서, 마호의 “, 그리고”를 삭제하여 바호에 “, 그리고”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의 경우, 상응하는 권한 있는 당국인 은행감독원 (Superintendencia de Bancos) 및 과테말라 은행(Banco de Guatemala)과의 협의를 통하여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12. 제12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2.7조 작업반 제3항에서 마호의 “, 그리고”를 삭제하여 바호에 “, 그리고”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의 경우,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노동 및 사회안전부(Ministerio de Trabajo y Previsión Social), 외교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및 과테말라 출입국 기관(Instituto Guatemalteco de Migración) 그리고 주제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기관의 대표”

나. 부록 12-가-2 기준의 출입국조치에서 다음을 추가한다.

“과테말라의 경우

가. 과테말라 공화국 국회 법령 제95-98호 「출입국법」 (Ley de Migración) 및 그 개정사항

나. 과테말라 공화국 국회 법령 제44-2016호 「이주법」 (Código de Migración Decreto No. 44-2016)

다. 이주 당국 합의 제7-2019호 「이주법에 관한 일반 규정」 (Acuerdo de Autoridad Migratoria 7-2019 Reglamento General del Código de Migración) ”

13. 제13장 통신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제13.23조 정의 정보서비스의 정의 나호에서 “엘살바도르,” 다음에 “과테말라,” 를 삽입한다.
- 나. 부속서 13-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부가적 의무 제2절 중미 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항에서 “엘살바도르,” 다음에 “과테말라,” 를 삽입한다.
 - 2) 제2항에서 “제13.9조에 대하여,” 다음에 “과테말라,” 를 삽입한다.
 - 3) 제3항에서 “엘살바도르,” 다음에 “과테말라,” 를 삽입한다.
 - 4) 제4항에서 “니카라과의 경우” 앞에 “과테말라와” 를 삽입한다. 그리고
 - 5) 제5항에서 “파나마의 경우” 앞에 “과테말라와” 를 삽입한다.
- 다. 부속서 13-나 지방서비스에서 단락의 시작에 “과테말라와” 를 삽입한다.

14.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5.73조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마호의 “, 그리고” 를 삭제하여 바호에 “, 그리고” 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의 경우, 다루어질 사안에서 권한 있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15. 제19장 협력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9.5조 접촉선 제2항에서 마호의 “, 그리고”를 삭제하여 바호에 “, 그리고”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의 경우,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나. 부속서 19-나 시청각 공동제작 및 서비스의 각주 3에서 “엘살바도르,” 다음에 “과테말라,”를 삽입한다.

16. 제20장 경쟁 정책 제20.12조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경쟁당국의 정의에서 마호의 “, 그리고”를 삭제하여 바호에 “, 그리고”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의 경우, 경쟁법에 의하여 지정될 경쟁당국”

나. 경쟁법의 정의에서 바호에 “, 그리고”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의 경우, 과테말라 공화국 국회가 제정할 경쟁법”

17. 제21장 제도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부속서 21-가 공동위원회에서 마호의 “, 그리고”를 삭제하여 바호에 “, 그리고”를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의 경우, 경제부장관(Ministro de Economía)”

나. 부속서 21-라 협정 조정자에서 마호의 “, 그리고”를 삭제하여 바호에 “, 그리고”로 추가하고 다음의 사호를 추가한다.

“사. 과테말라의 경우,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대외무역 운영지도국장(Director de Administración del Comercio

Exterior)"

18. 제23장 예외 제23.3조 과세 제6항다호에서 5)목의 “, 그리고”를 삭제하여 6)목에 “, 그리고”를 추가하고 다음의 7)목을 추가한다.

“7) 과테말라의 경우, 공공재정부장관(Ministro de Finanzas Públicas)”

19. 이 의정서의 부속서 3의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 각각을 과테말라 유보 목록으로 협정에 추가한다.

20.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 결정 제1/2021호, 제2/2021호 및 제3/2021호는 이 의정서의 발효일에 과테말라에 대하여 발효한다.

21. 이 의정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각국의 법적 요건 및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통보를 교환한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 당사국은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 서면으로 동시에 통보한다.

22. 이 의정서의 한국어본, 스페인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협정문의 영어본을 기본으로 불일치를 해결할 것이다.

23. 이 의정서와 그 부속서 및 각주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4. 이 의정서는 일방적인 유보나 일방적인 해석적 선언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장소:

장소:

일자:

일자:

과테말라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장소:

장소:

일자:

일자: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나마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장소:

장소:

일자:

일자:

코스타리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장소:

일자: